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명래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후변화, 해양오염,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로, 국제 환경 협력 및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효율적·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·운영하기 위하여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6619호, 2019.11.26. 개정, 2020.5.27. 시행)됨에 따라,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기준, 지정기간, 지정절차와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또한, 환경부장관이 국제 환경 협력 관련 업무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규정(안 제12조의2)

국가환경협력센터의 지정기준, 지정절차,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함.

나. 업무 위탁 근거 마련(안 제28조)

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업무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국조실 규제대상심사 결과, 규제 미해당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별표와”를 “별표 1과”로 한다.

제12조의2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(이하 “국제환경협력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3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
4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5.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
6. 「민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환경협력 분야의 전문기관

②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
2. 국제환경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전담조직, 전문인력, 시설을 확보할 것
3.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실적이 있을 것
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,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④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국제환경협력 업무 추진계획서
2. 국제환경협력 관련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
3.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
4. 시설명세서
5.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

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,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.

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제28조(업무의 위탁) 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관련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(제12조의2제6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다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인 경우(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- 4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
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행정처분기준		
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지정 취소		
나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	시정명령	업무정지 3개월	지정 취소
다.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시정명령	업무정지 3개월	지정 취소

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신청인	기 관 (법인[],비법인[])	명칭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
	대표자	성명	생년월일
	연락처	주소	(우편번호 :)
		전화번호	팩스

센터 소재지 (예정)

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7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
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국제환경협력센터 업무 추진계획서 2. 국제환경협력 관련 실적 증명 서류 3.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. 시설명세서 5.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제 호

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

1. 기 관 명:
2. 대 표 자: (법인등록번호 :)
3. 소 재 지:

위 기관을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7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환경부장관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환경기준) 「환경정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.	제2조(환경기준) ----- ----- ----- 별표 1과 ----- -----.
<신설>	제12조의2(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(이하 “국제환경협력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.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

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
3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

4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
5.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6. 「민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환경협력 분야의 전문기관

②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

2. 국제환경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전담조직, 전문인력, 시설을 확보할 것

3.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
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,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

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④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국제환경협력 업무 추진계획서
2. 국제환경협력 관련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
3.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 계획서
4. 시설명세서
5.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

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, 그 사실을 관

<신 설>

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⑥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.

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제28조(업무의 위탁) 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관련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국제협력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572